학 칙

제 주 관 광 대 학 교

2026. 06. 0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주관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대학교는 제주관광대학교라 한다.

제 3 조 (위치) 본 대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번지에 둔다.

제 4 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별도 입학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4.11.17)(개정 15.09.29)(개정 16.12.01)(개정 18.03.05)(개정 19.01.01)(개정 19.12.01.)(개정 20.05.01)(개정 21.05.20)(개정 22.05.20)(개정 23.05.09.)(개정 23.06.14.)(개정 25.05.13)(개정 26.06.01)

학 과 명		입학정원		
		주간	야간	계
학사 과정	카지노복합리조트경영학과	30	–	30
	AI융합창업학과	25	–	25
	의료관광경영학과	25	–	25
	간호학과	77	–	77
전문 학사 과정	호텔관광과	40	–	40
	카지노경영과	60	–	60
	항공서비스과	35	–	35
	관광중국어과	30	–	30
	유아교육과	40	–	40
	사회복지과	20	–	20
	(야간)사회복지과	–	35	35
	관광레저스포츠과	37	–	37
	(야간)관광레저스포츠과	–	58	58
	치위생과	60	–	60
	안경광학과	25	–	25
	치기공과	30	–	30
	뷰티디자인과	28	–	28
	뷰티코디네이션과	20	–	20
	호텔외식조리과	50	–	50
	메카트로닉스과	30	–	30
	AI로봇융합과	30	–	30
	인테리어건축과	25	–	25
	(야간)인테리어건축과	–	10	10
합계		717	103	820

제 4 조의 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14.11.17)(개정 19.12.01)(개정 24.02.05)(개정 25.02.10)(개정 25.12.01)

학 과 명	입학정원		
	주간	야간	계
호텔관광학과	-	15	15
사회복지학과	-	15	15
유아교육학과	-	15	15
관광중국어학과	-	15	15
뷰티디자인학과	-	15	15
호텔외식조리학과	-	15	15
치기공학과	-	15	15
합 계	-	105	105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 5 조 (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4.11.17)

1. 전문학사과정 : 2년(단,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치기공과, 안경광학과, 지능형콜드체인과(스마트콜드체인과) 3년)(개정 15.09.29)(개정 17.06.12)(개정22.05.20)(개정 24.02.05)
2. 학사과정 : 4년(개정 15.09.29)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2년(단, 전문학사과정 3년제 운영학과는 1년)(개정 15.09.29)

② 본 대학의 학위과정별 학제 구분은 별표1과 별표2를 따른다.(신설 19.12.01)

제 6 조 (재학연한) ① 삭제

② 삭제

③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7 조 (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8 조 (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1년 2학기로 한다.

-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2월말을 제1학기 개시일로 할 수 있다.)(개정 17.06.12)(개정 19.01.01)

-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8월말을 제2학기 개시일로 할 수 있다.)(개정 17.06.12)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기·동기방학 기간에 계절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17.06.12)

③ 고등교육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대학은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트랙, 전공 포함)에 한하여 특별학기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19.12.01)

제 9 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보강 주를 포함하여 매 학기 16주 이상으로 한다.(개정 18.03.05)

제 10 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기방학 : 6월부터 8월 사이
2. 동기방학 : 12월부터 2월 사이
3. 개교기념일 : 5월 15일
4. 일요일
5. 법정공휴일

② 휴업일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

제 11 조 (입학시기)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 이내로 한다. (개정 18.03.05)(개정 25.05.13)

② 재입학, 편입학 시기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8.03.05)

제 12 조 (입학자격)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 13 조 (입학지원 절차) ① 입학지원 절차는 신입생 모집시에 따로 공고한다.(개정 25.12.01)

② ①항의 입시 관련 서류들의 보존 기간은 4년 이상으로 한다.

③ 재입학 및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의 입학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19.01.01)

1. 재입학 : 재입학원서
2. 편입학 :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

④ ③항 서류들의 보존 기간에 관한 사항은 학사시행세칙을 따른다.(신설 19.01.01)

제 14 조 (입학전형) 신입학전형은 매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5.12.01)

제 14 조의 2 (입학전형관리기구) ① 신·편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개정 19.01.01)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과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을 따른다.(개정 18.03.05)

제 14 조의 3 (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개정 15.03.04)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학전형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규정을 따른다.(개정 18.03.05)

제 15 조 (입학허가) 입학은 매 학년도(매 학기)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신입생 모집요강에 의거 합격 및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18.03.05)(개정 25.05.13)

제 15 조의 2 (이중학적의 금지)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 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에 한해서는 이중학적을 허용한다.(개정 16.12.01)

제 15 조의 3 (입학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2. 이중학적을 가진 자

3.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4.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

제 16 조 (편입학) ① 전문대학에서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제적 처리 된 후 2개 학기가 경과된 자,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전문학사과정 2학년 1학기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전문대학 졸업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한 동등학력 보유자, 외국인은 전문학사과정 1학년 2학기에도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5.03.04)(개정 18.03.05)(개정 19.01.01)

② 전문대학 졸업자,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학사과정 3학년 1학기로 편입학 할 수 있다. 단,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의 편입학은 불허한다.(신설 18.03.05)(개정 24.02.05)

③ 편입학은 각 학과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교원양성학과의 경우에는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15.03.04)(개정 18.03.05)

④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입학규정을 따른다.(개정 15.03.04)(개정 16.12.01)(개정 18.03.05)(개정 19.01.01)

제 16 조의 2 (전과) ① 교내 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학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신청자로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산업체위탁교육으로 입학한 자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전과는 불허한다. 단, 산업체위탁교육으로 입학한 자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학과가 폐과된 경우에는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4.04.14)

② 전과허가인원은 해당학과의 당해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원양성학과와 의료보건학부 학과로의 전과는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15.09.29)(개정 19.01.01)

③ 전과한 자는 전출한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한 학과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는 졸업학점으로만 인정되며 전입한 학과의 전공과목이 아닌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된다. 단, 학과 폐과로 인하여 전과한 학생의 경우에는 전출 학과 전공 취득학점을 전입학과의 전공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01.01)

④ 동일학과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전과, 주간에서 야간으로의 전과는 불허한다.(개정 14.04.14)(개정 14.11.17)(개정 18.03.05)(개정 19.01.01)

⑤ 전과는 학적상태가 재학 중이고 학교가 공지한 기간 내에 전과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14.11.17)

⑥ 3년제 및 4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 전과하는 경우에는 3학기 이내 수료자의 경우에만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4.04.14)(개정 14.11.17)(개정 18.03.05)

⑦ (개정 14.04.14)(개정 14.11.17)(개정 15.09.29) 삭제(개정 17.06.12)

⑧ 전과는 교무위원회의 전과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어 허가된다.(개정 14.04.14)(개정 19.01.01)

⑨ (개정 15.09.29) 삭제(18.03.05)

제 17 조 (재입학) ①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2회(3년제 과정 이상 3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16.03.01)(개정 18.03.05)

② 재입학은 모집공고 시작 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학과별 제적자수의 합을 정원으로 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교원양성과정 운영학과와 의료보건학부 학과의 경우에는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14.11.17)(개정 18.03.05)(개정 19.01.01)

③ (개정 14.11.17) 삭제(개정 17.06.12)

④ 재입학 당시, 학과 간 통폐합 또는 폐과 등으로 인하여 학과가 없을 시에는 없어진 학과 소속으로 재입학 후, 학생 희망에 따라 전과를 신청하여 소속을 변경한다. 단, 해당자의 전과신청 시 전과정원은 당해 학기 학교가 공지한 내용을 따른다.(개정 18.03.05)(개정 19.01.01)

⑤ 재입학은 교무위원회의 재입학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어 허가된다.(신설 19.01.01)

제 17 조의 2 (외국인유학생의 입학) 외국인으로서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3월과 9월중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입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5.05.13)

제 18 조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 19 조 (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창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4.04.14)(개정 19.01.01)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제대 및 소집해제 예정일자 등을 고려하여 휴학기간을 설정한다. 단, 재학 중 휴학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14.04.14)

④ (개정 18.03.05) 삭제(개정 19.01.01)

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을 불허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각종 휴학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8.03.05)(개정 20.12.01)

⑥ 창업을 목적으로 한 휴학은 개인창업 및 공동창업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토대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4.04.14)

⑦ 일반휴학(군휴학 및 질병휴학 제외) 신청기간은 학교가 정한 기간 내로 한다. 다만, 학교가 지정한 일반휴학 신청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휴학을 신청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4.11.17)(개정 19.01.01)

⑧ 육아를 목적으로 한 휴학은 휴학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토대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6.12.01)

⑨ 휴학과 관련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학사시행세칙을 따른다.(신설 19.01.01)

제 19 조의 2 (미등록휴학) ① 매학기 개강일 전에 일정기간동안 미등록 휴학기간을 둘 수 있다.
② 미등록 휴학기간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학사시행세칙을 따른다.(개정 16.12.01)

제 20 조 (복학)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는 대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복학을 해야 한다.(개정 15.09.29)(개정 18.03.05)

② 군 입영 휴학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을 하거나 휴학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복학은 휴학 당시 해당학기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점부족 등 타당한 사유에 한하여 학과장의 재가를 얻어 휴학기간 중이라도 복학할 수 있다.(개정 18.03.05)

④ 복학 학기 당시 복학 전 학과가 학과 간 통폐합 또는 폐과 등으로 인하여 학과가 없을 시에는 당해 학기 복학생은 없어진 학과 소속으로 복학 후, 학생 희망에 따라 전과를 신청하여 소속을 변경한다. 단, 해당자의 전과신청 시 전과정원은 당해 학기 학교가 공지한 내용을 따른다.(개정 19.01.01)

⑤ 일반 휴학 중인 학생이 군복무 등으로 입대한 후 복무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제적되어 복학을 희망할 경우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제적을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 후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용한다.(개정 17.06.12)

⑥ ①항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종료일이 [개강 이후 → 수업일수 1/4선 이전]인 군 복학 대상자와 학교가 인정할만한 부득이 한 사유로 복학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일반 복학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수업일수 1/4선까지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5.09.29)

제 21 조 (자퇴)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 22 조 (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자(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입학자 제외)(개정 17.06.12)
3.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4. 삭제(개정 18.03.05)
5.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6. 사망자
7.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8. 삭제
9. (개정 15.03.04) 삭제(개정 20.03.01)

② 제적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사시행세칙을 따른다.(개정 19.01.01)

제 6 장 교과 및 수업

제 23 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자유선택교과, 교직교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편성은 전공교과는 2년제 50학점이상, 3년제 75학점 이상, 4년제 100학점 이상, 교양교과는 편성학점 기준 10~20%로 편성하여야 하며 실험실습을 필요로 하는 학과의 경우 전공교과목의 50%는 실험실습 과목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사시행세칙을 따른다.(개정 14.11.17)(개정 16.03.01)(개정 19.01.01)(개정 21.02.01)

② 본 대학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8.03.05)

③ 현장실습학기제 및 보건계열 현장실습은 전공 교과로 두며, 학과의 필요에 따라 전공필수 교과로도 편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18.03.05)(개정 19.12.01.)(개정 22.05.20)(개정 25.02.10)

④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01.01)

⑤ (개정 14.11.17)(개정 16.12.01) 삭제(개정 17.06.12)

⑥ 재정지원사업에 의해 진행되는 별도반에 대한 교육과정은 사업단 및 사업의 특성에 의해 운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재정지원사업의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재가를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14.11.17)(개정 16.12.01)(개정 19.01.01)

⑦ 학과 교육과정은 대면수업 또는 원격수업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원격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격교육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16.12.01)(개정 20.11.01) (개정 21.02.01) (개정 23.05.09.)

⑧ 간호학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간호학과 운영 규정을 따른다.(신설 20.05.01)

⑨ 비교과교육과정운영은 비교과교육과정운영규정을 따르며 학점 인정 요건을 충족한 이수자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에 의거한다. (신설 20.11.01) (개정 21.02.01)

⑩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현장실습운영 지침을 따른다. (신설 21.02.01)

제 24 조 (비정규 과정 및 평생교육원 운영)(개정 18.03.05) ① 본 대학교는 비정규 과정 및 평생교육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18.03.05)

② 비정규 과정 및 평생교육원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개정 18.03.05)

③ 비정규 과정 운영 및 평생교육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18.03.05)

④ 비정규 과정 및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인정은 학점은행에 등록된 과목에 한

하여 학과의 교육성격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개정 18.03.05)

⑤ 우리 대학 혹은 타 대학에 설치된 비정규 과정을 이수한 자 및 대학 입학 전, 소속학과와 유관한 직무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 대학은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에 의거한다. (개정 15.09.29)(개정 18.03.05)(개정 19.12.01.)

제 24 조의 2 (시간제 등록제 운영) ① 일반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된 학과에 한하여 시간제 등록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 시간제 등록제를 위하여 선발하는 인원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0%, 당해학과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④ 시간제 등록제 학생 선발방법은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의 성적 등으로 선발한다.

⑤ 시간제 등록제로 선발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시간제 등록제의 최대 이수학점은 정규학생의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1/2 이내로 하며, 매학기 10학점이상 이수 할 수 없다.

⑦ 기타 시간제 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4 조의 3 (학점제 등록제 운영) ①삭제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제 24 조의 4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운영) ① 고등교육법 제49조 및 동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2.03.01)

② 본 과정의 수업 연한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개정 22.03.01)

③ 산업체 경력 있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 및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력인정과정 등록 후 관련 분야에서 재직 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로 하고, 산업체 경력 없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 및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개정 25.02.10)

④ 삭제(개정 22.03.01)

⑤ 본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2.03.01)

제 24 조의 5 (학점은행제 운영) ①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미 개설된 학과에 한하여 학점은행제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점은행제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에 한한다.

③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소정의 기간에 신청 학점에 상응하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에 따라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④ 기타 학점은행제 등록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4 조의 6 (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삭제(개정 17.06.12)

제 24 조의 7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법에 따라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18.03.05)

②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 대학과 맺은 상호협약을 따른다.(개정 19.01.01)

제 24 조의 8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운영) ① 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 및 제50조의 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에 의하여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2.03.01)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 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 2년 이상
2.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 1년 이상

③ 산업체 경력 없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 및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개정 22.03.01)

④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가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2년제 학과 졸업자는 74학점, 3년제 학과 졸업자는 1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하며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이수인정 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1.02.01)

⑤ 고등교육법 제50조 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2.03.01)

⑥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학사시행세칙 등 관련 제 규정에 의거한다.(개정 17.06.12)

제 24 조의 9 (타 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운영)(개정 19.01.01)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법에 따라 양 대학 간 복수학위협정 또는 학점교류협정을 체결,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대학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 대학의 학위수여가 가능한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 24 조의 10 (마이크로디그리/나노디그리 과정)(신설 23.08.22) ① 세분화한 전문분야 교육과 다양한 융・복합 교육을 위한 마이크로디그리 및 나노디그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4 조의 11 (복수전공제)(신설 23.08.22) ① 소속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추가로 1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복수전공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5 조 (교과 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 실습, 실기 등의 교과목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학기 간 15시간 이상의 별도 이수단위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17.06.12)

②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필수과목을 운영하는 학과의 경우에는 이를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개정 19.01.01)(개정 21.02.01)(개정 24.02.05)

1. 2년제 학과 : 74학점 이상(교양 8학점 이상, 전공 40학점 이상 포함)
2. 3년제 학과 : 112학점 이상(교양 12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포함)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1년제 학과 : 18학점 이상
4.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2년제 학과 : 56학점 이상
5. 4년제 학과 : 130학점 이상(교양 14학점 이상, 전공 75학점 이상 포함)
6. (개정 14.04.14) 삭제(19.01.01)

③ 학생은 매학기 2,3년제는 15학점 이상(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9학점 이상, 4년제는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2학점(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16학점)을 초과 수강하지 못한다. 다만, 2년제 제4학기(3년제 6학기, 4년제 8학기)등록자는 22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만큼 수강 할 수 있다. (개정 14.11.17)(개정 18.03.05)(개정 19.01.01) (개정 21.02.01)

④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재학 학기별 6학점이내로 한다. 단, 100% 외부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 교과목의 경우에는 최대 취득가능 학점 수에 합하여 계산하지 않는다.(개정 17.06.12)

⑤ 제23조 ③항에 의한 현장실습 학점은 1학점 이상으로 하되, 자세한 운영 방법 및 기간, 학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개정 14.11.17)(개정 16.12.01)(개정 17.06.12)(개정 22.05.20)(개정 25.02.10)

⑥ 삭제

제 25 조의 2 (학점인정) ① 전문대학 또는 대학(또는 동등 학력을 인정해주는 기관)에서 1학기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우리대학에 입학한 자의 전적대학 기 취득 성적에 대하여 최대 8학점까지 교양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사시행세칙을 따른다.(개정 14.11.17)(개정 19.01.01)

② 삭제(19.01.01)

③ 여름 방학 중 외국어교육원 또는 학과에서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여름학기를 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수학점은 졸업 학점으로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에 필요한 교과목, 취득학점, 수업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01.01)

④ 연계교육이수자 중 우리대학교 연계교육 협약 학과로 입학한자에 대하여 이수한 과정을 성적으로 인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성적은 졸업 시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한다.

⑤ 삭제

⑥ 본 대학교는 총장의 명의에 따라 정식 등록된 체육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학교의 명예를 위해 활동하는 학생에 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수업 및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체육부관리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16.12.01)

⑦ 대학은 국·내외로의 실습학기제 운영을 통한 학점인정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16.12.01)(개정 19.01.01)(개정 25.12.01)

⑧ 사업에 의해 진행되는 별도반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운영될 수 있고, 해당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학점인정 및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다.

⑨ 원격과목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원격교육운영규정에 따른다.

⑩ 편입학자의 전적교 기취득 학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편입학규정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15.03.04)(개정 16.12.01)

⑪ 비교과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비교과교육과정의 학점인정 시행에 관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신설 20.11.01)(개정 21.02.01)

제 25 조의 3 (교환학생, 해외연수생에 대한 학점 인정)(개정 19.01.01) ① 교환학생 및 학기 단위로 해외연수에 파견된 학생들은 과정 이수 후, 22학점 범위내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

다. 단, 소속학과에 개설된 해당학기 교과목에 한해서만 인정한다.(개정 16.12.01)(개정 19.01.01)(개정 21.02.01)

② (개정 16.12.01)(개정 19.01.01) 삭제(개정 19.12.01)

③ (개정 16.12.01) 삭제(19.01.01)

④ 삭제

⑤ 삭제(개정 16.12.01)

⑥ 삭제

⑦ 삭제(개정 16.12.01)

⑧ 학기 단위가 아닌 해외연수에 파견된 학생들은 학사시행세칙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신설 19.12.01)

제 25 조의 4 (군 교육, 훈련자에 대한 학점 인정) ①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군복무 중 인 자가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훈련과정 이수로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23조 1항, 동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의거 취득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최대 12학점까지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개정 14.11.17)

②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군 복무 중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17.06.12)

제 25 조의 5 (학생적응능력향상프로그램(IPSA)의 운영) ① 삭제(개정 17.06.12)

② 삭제(개정 17.06.12)

제 25 조의 6 (기술사관 연계교육의 학점인정) ① 고교재학 중에 기술사관 연계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별도의 교육과정(본 대학 주관)을 이수한 자가 우리대학에 입학하였을 경우, 해당 학생이 입학 전에 이수한 별도 교과목에 대하여 총장의 재가를 얻어 학점인정을 할 수 있다.(개정 19.01.01)

② 삭제(개정 19.01.01)

③ 삭제(개정 19.01.01)

④ ①항에 대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만 인정된다.(신설 19.01.01)

제 25 조의 7 (성인학습자반의 학점인정) (개정 14.11.17) 삭제(개정 17.06.01)

제 25 조의 8 (2+1과정 입학자의 전적대학성적 학점인정) (개정 14.04.14) 삭제(개정 18.03.05)

제 25 조의 9 (창업대체학점인정) 학생이 창업준비활동 및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하

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은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6.03.01)

제 25 조의 10 (학생적응능력향상프로그램(IPSA+)의 운영) 제 56조의 7 (이관 20.11.01)

제 25 조의 11 (K-MOOC 강좌 이수에 대한 학점인정) ① 대학은 K-MOOC 강좌를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할 수 있다.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격교육운영규정을 따른다.(신설 19.01.01)

제 25 조의 12 (어학성적 우수자에 대한 학점인정) ① 대학은 어학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할 수 있다.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사시행세칙을 따른다.(신설 19.01.01)

제 25 조의 13 (학습경험 인정제) 학습경험 인정제를 활용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습경험인정제 운영지침을 따른다. (신설 21.02.01)

제 26 조 (수업) ① 매학기의 개설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개시 전에 총장의 재가를 얻어 결정하고 08:00부터 23: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16.12.01)

② 교과목 성격상 필요에 따라 수업을 야외수업 및 현장이동학습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16.12.01)

③ 야간강좌 또는 주말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16.12.01)(개정 17.06.01)

④ (개정 14.11.17) 삭제(개정 17.06.12)

⑤ 산업체현장실습 대상자 및 정규수업연한 초과자는 원격교육 방식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원격교육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14.04.14)(개정 19.01.01)

⑥ 교과목 성격상 필요에 따라 집중이수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⑦ 수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업관리지침을 따른다. (신설 20.05.01)

제 26 조의 2 (수업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학칙 제 26조 (수업)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 등 대응을 위한 수업방식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5.01)

제 26 조의 3 (교류수학)(개정 19.12.01.) 국내대학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거나, 우리 대학 재학생이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할 경우에 총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수학 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한다.(개정

19.12.01.)(개정 20.05.01)

제 7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 27 조 (평가시험) ① 시험은 매학기 학교가 지정한 시험기간 내에 실시하며, 부득이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가 지정한 시험기간 외에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7.06.12)

②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대하여 0점을 부과한다.(개정 17.06.12)

③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 28 조 (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 · 실습 ·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목과 NCS기반 및 현장중심형 교과목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4.11.17)(개정 19.01.01)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0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실험, 실습, 봉사, 교류수학 등의 교과목은 P를 급제로 할 수 있다.(개정 19.01.01)

<9단계 평점방법>

등 급	배 점	평 점
A^+	100 ~ 95	4.5
A^0	94 ~ 90	4.0
B^+	89 ~ 85	3.5
B^0	84 ~ 80	3.0
C^+	79 ~ 75	2.5
C^0	74 ~ 70	2.0
D^+	69 ~ 65	1.5
D^0	64 ~ 60	1.0
F	59점 이하	0
P	불계	

③ 삭제(개정 17.06.12)

④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성적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⑤ 성적 배점 및 분포에 관한 사항은 학사시행세칙을 따른다.(개정 17.06.12)

⑥ 종합 평점평균의 백분위는 다음 산출 공식표를 적용한다.

$$\text{백분위} = \frac{\Sigma\ (\text{과목별 학점 X 과목별 원점 수})}{\Sigma\ (\text{총 신청 학점 수})}$$

⑦ 조기취업자의 출석성적 산출을 위한 제반 사항은 조기취업자관리지침을 따른다.(신설 18.03.05)

제 29 조 (진급인원) 삭제

제 30 조 (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기 이수 성적(개정 15.03.04)
3.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취득한 성적

제 31 조 (경고) 재학 중 매학기 성적이 불량한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한다. 학사 경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사시행세칙을 따른다.(개정 15.03.04)

제 32 조 (졸업 및 수료)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동학칙 제25조 ②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1호 및 별지4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1과 별표2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19.01.01)

② 삭제(개정 19.01.01)

③ 재적생, 제적생 가운데 수료증 발급을 원하는 자에게는 별지3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01.01)

전문학사과정	1학년 수료 : 36학점 이상(2개 학기 이상 이수) 2학년 수료 : 72학점 이상(4개 학기 이상 이수) 3학년 수료 : 108학점 이상(6개 학기 이상 이수)
학사과정	1학년 수료 : 32학점 이상(2개 학기 이상 이수) 2학년 수료 : 64학점 이상(4개 학기 이상 이수) 3학년 수료 : 96학점 이상(6개 학기 이상 이수) 4학년 수료 : 128학점 이상(8개 학기 이상 이수)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1학년 수료 : 18학점 이상(2개 학기 이상 이수) 2학년 수료 : 36학점 이상(4개 학기 이상 이수)

④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⑤ 대학은 사회 및 본 대학에 대한 지대한 공헌 등 명예학위를 수여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명예학위수여는 대상자를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이를 승인한다.(개정 19.01.01)

⑥ 삭제(개정 19.01.01)

⑦ 우리대학과 국제교류협정 체결을 맺은 외국 대학과의 협약내용에 따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01.01)

⑧ 우리대학과 복수학위과정 교류협정 체결을 맺은 대학과의 협약내용에 따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19.01.01)

제 32 조의 2 (조기졸업) 삭제

제 32 조의 3 (후기졸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1. 졸업학점 미달자
2. 졸업학점 기준 교양학점 10% 이상 (2년제 학과 8학점 이상, 3년제 학과 12학점 이상, 4년제 학과 14학점 이상)미달자 (개정 14.11.17)(개정 16.03.01) (개정 21.02.01)(개정 24.02.05)
3. 졸업학점 기준 전공학점 미달자(2년제 학과 40학점 이상, 3년제 학과 60학점 이상, 4년제 학과 75학점 이상) 미달자(개정 14.11.17)(개정 16.03.01)(개정 24.02.05)
4. 필수이수 교과목 미 이수자(개정 14.11.17)
5.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미 이수자(개정 18.03.05)
6. 우리대학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복수학위과정 협약상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개정 18.03.05)

제 33 조 (유급) 삭제

제 8 장 학 생 활 동

제 34 조 (학생회 조직) ①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활동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본 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

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다만, 휴학 및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을 상실 한다.

③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활동이 정지된다.

④ 야간학생회는 입학정원 및 소속 학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조직을 두지 아니한다. 단, 본 규정은 2003학년도 학생회부터 시행한다.

⑤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 연구 활동
2.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 또는 주변의 각종 재난방지와 화재 진압 등의 지원활동
5. 기타 정서 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 활동

제 35 조 (총학생회 회비) ①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연간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자취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개정 19.01.01)

② 총학생회 운영과 총학생회비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에 따른다.(신설 19.01.01)

제 36 조 (학생단체의 조직) ①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는 조직 할 수 없다.

②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7 조 (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등교거부, 불온게시물의 무단 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제 38 조 (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고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9 조 (학생활동의 사전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 39 조의 2(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집단안전관리규정을 따른다. (신설 21.02.01)

제 40 조 (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처벌)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 포함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 41 조의 2 (학생자치기구) 학생자치기구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을 따른다.(신설 19.12.01)

제 9 장 규율과 상벌

제 42 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서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 43 조 (결석) (삭제)

제 44 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 45 조 (징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이 학칙을 위반한 자
2. 무계출 결석이 4주간을 초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4. 상대방에게 성적행위 및 성희롱을 한 자로써 언어 및 행위자체로 인하여 상대방의 의사

에 반하여 불쾌감을 조성한자. 다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규정 한다.

제 10 장 납 입 금

제 46 조 (납입금) ① 재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납입금 납부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납입금은 수업료 등 총장이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4.02.05)

③ 납입금의 납부기간은 매학기 총장이 정한다.

④ 실험·실습 및 실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

⑤ 납입금은 결석 또는 정학을 이유로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⑥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일부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은 신청한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납입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 1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1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 46 조의 2 (납입금 반환) ① 납부된 납입금은 과 오납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을 포기하였을 경우
2. 법령·본인의 질병·사망·천재 및 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할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이 미등록휴학신청 기간 내에 미등록휴학신청을 원할 경우(단, 등록휴학 중인 자가 복학을 신청했다가 복학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신설 19.01.01)
6.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신설 21.05.20)
7.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이월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반환할 수 있다.(신설 21.05.20)

② 제①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신청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반환한다.(개정 14.04.14)(개정 19.01.01)(개정 24.02.05)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당해학기 개시일 전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제 47 조 (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및 국가유공자녀 등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11 장 장 학 금

제 48 조 (장학금) ① 총장은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② 교내장학금 지급에 대한 장학금 종류, 선발기준, 장학금액 등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5.06.02)

③ 교외장학금은 장학금 기부자의 목적에 맞게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개정 15.06.02)

④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미등록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15.06.02)

제 12 장 위 원 회

제 49 조 (구성) ① 본 대학교에 위원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교무위원회
2. 교원업적평가위원회
3. 교원인사위원회
4. 교원양성위원회

5. 교원징계위원회
6. 교육과정심의위원회
7. 교육환경개선위원회
8. 국제교류위원회
9. 기자재선정심의위원회
10. 대학평의원회
11. 도서관운영위원회
12. 등록금심의위원회
13.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14.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15. 산학협력활동성과평가위원회
16.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17. 입학전형공정관리 대책위원회
18. 입학전형위원회
19.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20. 장학위원회
21.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22.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23. 정보센터운영위원회
24. 직원업적평가위원회
25. 직원인사위원회
26. 직원징계위원회
27. 진로취업지도위원회(개정 22.03.01)
28.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29. 학생지도위원회
30. 삭제
31.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위원회(개정 19.01.01)
3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신설 19.01.01)
33. 대학발전위원회(신설 22.03.01)
34. 가족회사운영위원회(신설 22.03.01)
35. 기타 제 위원회(신설 22.03.01)

제 50 조 (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는 총장 및 각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단, 대학평의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무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업적평가를 심의하기 위한 사항
3. 교원(학교장 제외)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교원자격검정 및 교원양성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징계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사항
7.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 전반적인 사항
9. 기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
10. 대학의 발전계획 등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2. 등록금 심의에 관한 사항
13. 산업체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14.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
15. 산학협력 활동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6.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17. 입시공정에 관한 사항
18.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19.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20. 장학 업무에 관한 사항
21.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2. 정년보장 심사에 관한 사항
23.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4. 직원의 업적평가를 심의하기 위한 사항
25.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26. 직원의 징계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
27. 학생 취업 및 진로에 관한 사항(개정 22.03.01)
28.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29.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30. 삭제
31.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19.01.01)

32.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19.01.01)
33. 대학발전에 관한 사항(신설 22.03.01)
34. 가족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2.03.01)
35. 기타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2.03.01)

제 13 장 직 제

제 51 조 (교원 및 직원) 본 대학교 교원의 직급과 직원의 직종은 다음과 같다.
① 교원은 강사,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한다.(개정 19.12.01)
②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및 계약직으로 한다.

제 51 조의 2 (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 두는 교원은 강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개정 19.12.01)
②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
③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12.01)
1. 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초빙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임용할 수 있다.
3. 삭제(개정 19.12.0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중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및 현장실습을 전담할 산학협력전담교수를 두며, 산학협력전담교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1 조의 3 (정원) 교원의 정원은 대학 설립·운영규정 제6조에 의하고 직원은 정관 제77조의 별표3과 같다.

제 51 조의 4 (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입시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 52 조 (직제) ① 본 대학교에는 기획처, 입학홍보처, 교무학생처, 산학협력처, 행정지원처,

국제교류원 등을 두며 필요에 따라 대학본부에 별도의 부서 및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개정 14.11.17)(개정 16.03.01)(개정 16.12.01)(개정 22.05.20)(개정 25.02.10)

② 각 처(원)와 센터에는 처(원)장, 센터장, 부장 또는 팀장을 보하고 각 처(원)와 센터의 처(원)장, 센터장, 부장 또는 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16.03.01)(개정 20.11.01)(개정 22.5.20)

③ 산학협력단은 총장의 감독을 받는 별도 기구이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학칙 제55조의2에 의거한다.(개정 14.11.17)(개정 16.03.01)

④ (개정 14.04.14)(개정 14.11.17)(개정 16.03.01)(개정 17.09.01) 삭제(개정 19.12.01)

⑤ (개정 14.11.17) 삭제(개정 17.09.01)

⑥ (개정 16.03.01) 삭제(개정 19.12.01)

⑦ (개정 16.03.01) 삭제(개정 19.12.01)

⑧ (개정 16.03.01) 삭제(개정 19.12.01)

⑨ 대학본부의 별도 부서 및 하부조직과 총장직속기구의 일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16.03.01)(개정 16.12.01)(개정 17.09.01)(개정 18.03.05)(개정 19.12.01)

제 52 조의 2(장애학생지원) 제 56 조의 8 (이관 20.11.01)

제 14 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제 53 조 (부속 및 부설기관)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둔다.

① 도서관, 학생생활관, 정보센터, 제주관광대학교직장예비군중대 등 기타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평생교육원, 부속유치원, 부속어린이집, 보육교사교육원, 창업지원단(창업보육센터, 창업교육지원센터), 한국어학당, 요양보호사교육원, 컨벤션센터, 글로벌인재교육원, 응급의료교육지원센터 등 기타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14.04.14)(개정 14.11.17)(개정 15.09.29)(개정 16.03.01)(개정 16.12.01)(개정 17.09.01)(개정 19.12.01)(개정 20.11.01)

② 부속 및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16.12.01)

제 53 조의 2 (부설연구소)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설연구소를 둔다.

① 향토요리연구소, 해양레저연구소, 제주노인연구소, 관광레저개발연구소, 문화관광해설사연구소, 관광기념품개발연구소, 의료코디네이터연구소, 농어촌관광연구소, 스파연구소 등 기타 필요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개정 14.11.17)

② 부설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53 조의 3 (JTU사고대책본부) 우리대학 재난 발생 시, 대학의 모든 제반 조직체계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JTU사고대책본부 체계로 전환되며 세부사항은 관련 운영규정을 따른다.(개정 14.11.17)(개정 16.12.01)

제 15 장 보 칙

제 54 조 (시행세칙)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6.12.01)

제 54 조의 2 (학칙개정절차) 삭제

제 55 조 (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교육 지원자가 재학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산업체를 퇴직 할 경우 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할 수 있다.(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은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5 조의 2 (산학협력단) 본 대학교에는 산업교육진흥원 및 산학협력촉진법률에 의거 독립법인인 제주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둔다.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처장이 겸보한다.

② 산학협력단에는 사무국과 사업부서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의 정관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6 조 (연계교육)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총장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2연계교육 협약이 체결된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대학, 산업체와 상호 협조

하여 연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으로 본 대학교에 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고교졸업자 중 연계교육 협약을 유지하고 연계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연계교육 협약학과에 한하여 입학을 허용한다.

③ 연계교육 이수자 중 본 대학교 연계교육 협약학과에 입학한자에 한하여 연계교육 기이수 교과목을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④ 연계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6 조의 2 (원격교육) ① 대학은 학생교육의 원활한 수행과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다각적인 교육 방법 모색의 일환으로 원격교육을 할 수 있다.(개정 19.01.01)(개정 23.05.09.)

② 삭제(개정 19.01.01)

③ 삭제(개정 19.01.01)

④ 삭제(개정 19.01.01)

⑤ 원격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격교육운영규정을 따른다.(개정 19.01.01)(개정 20.11.01)

제 56 조의 3 (학생모집 중지학과의 폐과에 대한 경과 조치 등)(개정 15.09.29) ① 해당년도 학생모집이 중지된 학과의 존속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년제 학과 : 학생모집 중지 당해 학년도까지(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2년제 학과 포함)
2. 3년제 학과 : 학생모집 중지 당해 학년도를 기준으로 2개 학년도까지
3. 4년제 학과 : 학생모집 중지 당해 학년도를 기준으로 3개 학년도까지

② 학생모집 중지학과의 학생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생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생모집 중지학과 소속으로 학생모집 중지 학년도 이후 학과 존속기간 중 복학 · 재입학한 자의 학년이 1학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타 학과로 전과 신청을 해야 한다.
2. 학생모집 중지학과 소속으로 학생모집 중지 학년도 이후 학과 존속기간 중 복학 · 재입학한 자의 학년이 2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학과 소속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 56 조의 4 (도서관운영 등)(개정 16.03.01)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규정」에 따른다.

1.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 . 훈련에 관한 사항
5.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관한 사항

제 56 조의 5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원양성학과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 운영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5.01)

제 56 조의 6 (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관 20.11.01)

제 56 조의 7 (학생적응능력향상프로그램(IPSA+)의 운영)(신설 17.06.12) ①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 요인을 측정하고 학생 개개인에 맞춰진 맞춤형 학생 관리 서비스를 통해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적응능력향상프로그램(IPSA+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학생적응능력향상프로그램(IPSA+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과 학생상담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19.01.01)(개정 19.12.01)(이관20.11.01)

제 56 조의 8 (장애학생지원) 제52조의 2(이관 20.11.01)

①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6 조의 9 (소수집단학생지원) ① 소수집단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소수집단학생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설 20.11.01)

② 소수집단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1.01)

제 16 장 대학평의원회

제 57 조 (대학평의원회) 본 대학교에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①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7 장 성희롱금지

제 58 조 (성희롱금지) ① 학칙 제 51 조의 교직원은 그 지휘를 이용하거나 업무, 학업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1항의 성희롱 적발 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

③ 성희롱금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8 조의 2 (예방교육) ① 재학생은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직원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01)

② 교직원은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국가에서 요구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01)

③ 재학생은 매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01)

제 18 장 학칙 개정 절차

제 59 조 (학칙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제·개정한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60 조 (학칙의 개정 절차) ① 학칙의 개정 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교직원에게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5.02.10)

③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학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③항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학칙 공포 이전에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①항 내지 ④항의 절차를 거친 학칙 제·개정안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 61 조 (개정학칙의 공포) ① 개정 절차를 거친 학칙은 총장이 공포한다.

② 삭제(개정 14.04.14)

제 62 조 (시행일) 공포된 학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63 조 (자체평가) 제 56 조의 6(이관 20.11.01)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정보처리과, 실내건축과, 관광일어통역과 신설 및 산업체 위탁교육 신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제정보통신과, 무역사무자동화과, 치위생과, 보험금융과 신설)

②(교과이수단위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제24조 제5항의 규정은 ' 9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아교육과, 음악과, 관광레저스포츠과 신설, 보험금융과 40명증원)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외식산업과, 관광정보처리과(야간), 실내건축과(야간), 관광일어통역과(야간) 신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과, 컴퓨터디자인과 신설, 특수관광산업과, 관광사진예술과, 국제회의산업과, 무역사무자동화과, 보험금융과는 각각 카지노경영과, 사진영상과, 컨벤션산업과, 사무자동화과, 창업경영과로 학과명칭 변경, 호텔경영과, 관광정보처리과, 실내건축과, 창업경영과는 각각 40명 증원, 관광레저스포츠과(야) 80명 증원)

②(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한 경과 조치) 학과 명칭이 변경된 특수관광산업과, 관광사진예술과, 국제회의산업과, 무역사무자동화과, 보험금융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8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카지노경영과, 사진영상과, 컨벤션산업과, 사무자동화과, 창업경영과의 소속으로 본다.

③(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학칙 제 23 조 제1항은 199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복학생은 복학당시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①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주관광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제주관광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사진영상과, 사무자동화과, 창업경영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 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사진영상과, 경영정보시스템과(사무자동화과, 창업경영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 또는 학과통합 및 계열의 신설로 인하여 종전의 관광영어통역과, 관광일어통역과, 컨벤션산업과, 관광정보처리과, 국제정보통신과, 관광레저스포츠과, 메카트로닉스과, 경영정보시스템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외국어계열(관광영어통역과, 관광일어통역과), 관광컨벤션산업과, 관광정보산업계열(관광정보처리과, 국제정보통신과), 관광스포츠계열, 메카트로닉스계열, 관광경영정보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 또는 학과통합 및 계열의 신설로 인하여 종전의 귀금속공예과, 관광사진영상과, 실내건축과, 음악과, 관광외식산업과, 컴퓨터디자인과, 관광정보산업계열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2001학년도말 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금속제품디자인과, 관광디자인계열(관광사진영상과, 실내건축과, 컴퓨터디자인과), 음악예술과, 관광외식조리계열, 관광컴퓨터정보계열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금속제품디자인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2002학년도말 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관광귀금속공예과의 소속으로 본다.

제 2 조 ①(수업년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수업연한의 연장으로 인하여 종전의 유아교육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정된 학칙의 수업연한을 따른다.

부 칙

제 1 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연예과, 사회복지과(야간) 신설)

②(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관광경영정보과, 관광스포츠계열에 소속된 재학생중 2003학년도말 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관광경영과, 관광레저스포츠계열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이 효력발생시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등의 지적 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 칙

제 1 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관광귀금속공예과 , 뷰티디자인과 , 방송연예과 , 관광컴퓨터정보계열 , 메카트로닉스계열 , 관광디자인계열(사진영상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쥬얼리디자인과 , 관광뷰티디자인과 , 방송영상과 , 관광멀티미디어과 , 메카트로닉스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관광디자인계열(비주얼디자인전공) , 관광디자인계열(인테리어건축디자인전공) , 관광디자인계열(방송사진영상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호텔광고디자인과 , 인테리어건축과 , 방송사진영상과의 소속으로 본다.

제 2 조 (수업년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수업연한의 연장으로 인하여 종전의 안경광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정된 학칙의 수업연한을 따른다.

부 칙

제 1 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관광외국어계열(관광영어통역전공,관광일어통역전공,관광중국어전공)에 소속된 재적생중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관광영어과,관광일본어과,관광한중언어계열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관광컨벤션산업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항공컨벤션경영과의 소속으로 본다.

③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관광멀티미디어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관광멀티미디어게임과의 소속으로

본다.
④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관광한중언어계열에 소속된 재적생중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관광중국한어계열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호텔광고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디자인경영과의 소속으로 본다.
③(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관광중국한어계열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관광중국어계열의 소속으로 본다.
④(학생모집 중지학과의 폐과에 대한 경과조치) 2011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쥬얼리디자인과, 음악예술과, 방송사진영상과는 2011년 2월 25일부로 폐과되며, 학칙에 의하여 입학한 학생정원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생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호과 신설)

제 2 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①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주관광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제주관광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한 경과 조치)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항공컨벤션경영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3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항공컨벤션경영계열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항공컨벤션경영계열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1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항공서비스과의 소속으로 본다.

③(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관광뷰티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1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뷰티디자인과의 소속으로 본다.

④(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관광외식조리계열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1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관광호텔조리계열의 소속으로 본다.

⑤(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관광멀티미디어게임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1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멀티미디어게임과의 소속으로 본다.

⑥(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함정기관/전자기술부사관계열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1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해군부사관계열의 소속으로 본다.

⑦ ②~⑥항의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는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사경고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학사경고제도는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6학년도 학생모집중지학과 : 관광영어과

부 칙

제1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4년을 기준 시점으로 부칙 제1조 ①항 시행일까지의 학칙 개정 이력을 명기한다.

③ 2017학년도 학생모집중지학과 : 디자인경영과

부 칙

제1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3조(교육과정) ③항 개정에 따른 현장실습 교과목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해군기술부사관계열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1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해군기술부사관과의 소속으로 본다.

④ (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관광호텔조리계열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1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관광호텔조리과의 소속으로 본다.

⑤ (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관광중국어계열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1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관광중국어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간호학과의 3년제 과정 학생에 대해서는 (별표2)에도 불구하고 3년제 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간호전문학사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6조의2 ⑩항과 관련하여 간호학과로의 전과는 불허한다.

부 칙

제1조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국제비즈니스학과에 소

속된 재적생 중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국제경영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③ (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국제의료중국어통역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의료관광중국어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④ (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호텔경영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2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호텔관광과의 소속으로 본다.
⑤ (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관광경영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2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호텔관광과의 소속으로 본다.
⑥ (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관광경영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2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호텔관광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보직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처, 센터의 직원 팀장은 이 학칙에 의하여 부장으로 본다.
제 3 조 (현장실습 교과목의 편성ㆍ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제23조(교육과정)③항 현장 실습 교과목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복학 및 재입학 학년도 학과 교육과정 이수 구분을 따른다. 단, 이 조항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4조의 8, 제25조, 제25조의 3, 제32조의 3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21학년도 1학년으로 복학, 재입학, 편입학, 전과 하는 학생들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해군기술부사관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국방기술부사관과의 소속으로 본다.
③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리조트카지노경영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2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카지노복합리조트경영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멀티미디어게임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2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게임콘텐츠과의 소속으로 본다.
③ 2023학년도 학생모집 중지학과 : 관광일본어과, 국방기술부사관과

부 칙

제 1 조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의료관광중국어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2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의료관광코디네이터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③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국제경영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2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창업마케팅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④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스마트콜드체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2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지능형콜드체인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졸업에 필요한 전공교과 이수기준 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5조, 제32조의 3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정규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24학년도 이후 복학, 재입학, 편입학, 전과하는 학생들도 당해 해당 학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관광레저스포츠계열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2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관광레저스포츠과의 소속으로 본다.

③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카지노복합리조트경영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2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글로벌복합리조트경영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④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관광호텔조리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2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호텔외식조리과의 소속으로 본다.

⑤2026학년도 모집중지학과 : 사회복지과(야간)

부 칙

제 1 조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관광호텔조리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2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호텔외식조리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위 종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사회복지전문학사 및 사회복지학사는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지능형콜드체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2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AI로봇융합과의 소속으로 본다.

③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창업마케팅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2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AI융합창업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④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글로벌복합리조트경영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2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카지노복합리조트경영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⑤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의료관광코디네이터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2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의료관광경영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⑥ 폐지(모집중지)학과 재설치 : 사회복지과(야간)

⑦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중지학과 : 사회복지상담과(야간), 카페베이커리과, 평생레저스포츠과(야간), 게임콘텐츠과

(별지1) 전문학사 학위증 서식(개정 19.01.01)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000 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0 0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제 주 관 광 대 학 교 총 장

ㅇㅇㅇ 박 사 ㅇㅇㅇ

학위등록번호 : 제주관광 - 연도 - 일련번호

(별지2) 삭제(개정 19.01.01)

(별지3) 수료증 서식(개정 19.01.01)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과 학년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제 주 관 광 대 학 교 총 장

ㅇㅇㅇ 박 사 ㅇㅇㅇ

(별지4) 학사학위 학위증 서식(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개정 19.01.01)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000 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0 0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제 주 관 광 대 학 교 총 장

ㅇㅇㅇ 박 사 ㅇㅇㅇ

학위등록번호 : 제주관광 - 연도 - 학(일련번호)

(별지5) 학사학위 학위증 서식(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제외)(신설 19.01.01)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000 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0 0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제 주 관 광 대 학 교 총 장

ㅇㅇㅇ 박 사 ㅇㅇㅇ

학위등록번호 : 제주관광 - 연도 - 일련번호

(별표1)(개정 14.11.17)(개정 15.09.29)(개정 17.06.12)(개정 18.03.05)(개정 19.01.01)(개정 19.12.01)(개정 20.03.01)(개정 22.03.01)(개정 23.05.09.)(개정 25.02.10)(개정 25.05.13)(개정 25.12.01)(개정 26.02.13)(개정 26.06.01)

전문학사학위의 종별

종별	해당 학과
공업전문학사	게임콘텐츠과, 메카트로닉스과, 인테리어건축과(주간, 야간), AI로봇융합과(지능형콜드체인과, 스마트콜드체인과)(3년제)
보건전문학사	치위생과(3년제), 뷰티디자인과, 안경광학과(3년제), 치기공과(3년제), 뷰티코디네이션과
관광전문학사	호텔관광과, 카지노경영과, 항공서비스과, 호텔외식조리과(관광호텔조리과), 관광중국어과, 카페베이커리과
교육전문학사	유아교육과(3년제)
체육전문학사	관광레저스포츠계열(레저스포츠전공, 경호전공), 관광레저스포츠과(주간, 야간)
레저스포츠전문학사	평생레저스포츠과(야간)
행정전문학사	사회복지과(주간, 야간)
사회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과(주간, 야간) 사회복지상담과(야간)

* 사회복지전문학사는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별도로 수업연한이 표기되지 않은 학과들의 수업연한은 2년제임

(**별표2**)(개정 14.11.17)(개정 15.09.29)(개정 17.06.12)(개정 19.12.01)(개정 20.03.01)(개정 22.03.01)(개정 23.05.09)(개정 24.02.05)(개정 25.02.10)(개정 25.05.13)(개정 25.12.01)(개정 26.02.13)(개정 26.06.01)

학사학위의 종별

종 별	해 당 학 과
관광경영학사	카지노복합리조트경영학과(글로벌복합리조트경영학과)
관광학사	호텔관광학과(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2년제), 호텔외식조리학과(관광호텔조리학과)(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2년제), 관광중국어학과(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2년제), 의료관광경영학과(의료관광코디네이터학과)
통역학사	의료관광중국어학과
경영학사	AI융합창업학과(창업마케팅학과, 국제경영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보건학사	뷰티디자인학과(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2년제), 치기공학과(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1년제)
행정학사	사회복지학과(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2년제)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과(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2년제)
교육학사	유아교육학과(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1년제)

* 사회복지학사는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별도로 수업연한이 표기되지 않은 학과들의 수업연한은 4년제임